

자녀가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알아보세요!

1. 귀하의 자녀는 영어학습자서비스에서 점검을 받고 시험을 치고 평가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에도 해당합니다.
2.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보내는 통신문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의 자녀는 영어를 가르치고 다른 수업을 따라가도록 도우는 교사들과 보조교사들에게서 배울 권리가 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과 수업이 온라인으로 열리는 동안에도 해당합니다.
4. 학교가 다시 개강하여 시작될 때, 영어 학습자인 귀하의 자녀는 대면 수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5. 영어학습자프로그램이 개설되면 귀하의 자녀에게는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영어 구사능력이 충분하게 되거나, 귀하가 영어학습자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학교는 귀하의 자녀에게 이 프로그램을 그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귀하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면 평가를 받을 권리와 특별한 교육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교육구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교육구청 제2 언어로서의 영어 (ESL) 또는 이중언어 교육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영어학습자 도움에 관해 알아보거나, 교육구청 특수교육 사무국, 아동교육팀 또는 기타 사례관리자와 접촉하여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을 알아보십시오.

이 플라이어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하여, 또는 뉴저지 공립학교에서 가족의 권리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교육법 센터 연락처 **973-624-1815**, 내선 **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전화는 전적으로 대외비이며, 저희들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날짜: 2021년 4월15일